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원〉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70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6170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인구감소지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원(안 제20조제5항 신설)	3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70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1. 20.
3. 회 부 일 : 2026.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요가 적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원(안 제20조제5항 신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¹⁾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이라 함)의 제작·발급을 시·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발급대행자”라 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민간 사업자임.

하지만 번호판 발급 업무는 발급대행자가 시·도지사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번호판 제작용 첩형(凸形) 관리 의무 및 유출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간 영업 활동이 아니라 공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첩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 성격을 지닌 행정 사무의 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²⁾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89개의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최근 10년간(2016~2025.9) 12.5% 감소하여 다른 지역(전국 평균 1.1% 감소)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90년 27.6%, 2000년 8.0%, 2010년 3.6%, 2020년 2.9%, 2024년 1.3%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⁴⁾

또한,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제12조⁵⁾에 따라 자동차 소유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하혜영·류영아,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Ⅲ.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계 개편방안」, 국회미래연구원, 2025.12.

4) 임현진,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국내 자동차 시장」, 한국자동차연구원, 2025.3.13.

5)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 7. 6., 2021.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2021. 11. 16., 2024. 6. 18.>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2015. 7. 6.>

자는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관청에서 등록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우수한 대도시권에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인구감소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가 감소하면서 발급대행자는 발급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동차 운행에 필수적인 번호판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 발급대행자의 번호판 제작·발급 업무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의 발급대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원거리 이동 없이 가까운 곳에서 번호판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인프라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있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서비스 공백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한편,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지원 대상 업무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⁶⁾에서는 여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은 자동차 운행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로, 인구감소지역 대행자가 수익성 악화로 폐업할 경우, 지역 주민들은 번호판 발급을 위해 인근 도시로 원거리 이동을 하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발급 대행 업무는 시·도지사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75